

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103 |
|----------|------|

2023년 9월 8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14일 윤영희 의원 (찬성 34명)
-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- 상정일자 :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3년 9월 4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윤영희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. 2023년 제정된 상위법인 「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과 일치하도록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법적 정합성과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

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함.
- 스토킹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(안 제2조).
- 주요사업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(안 제5조 제6호 및 제9호,제10호).
- 피해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0조).
- 그 외 각 조항에 ‘스토킹범죄’를 ‘스토킹’으로 변경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 : 해당 없음.

III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조례안의 개요

- 본 조례안은 현행 「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2023년 1월 17일에 제정되어 지난 7월 18일에 시행된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스토킹방지법’)」을 반영하여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한 용어(스토킹)를 변경하는 등 제명을 포함한 구성과 내용을 전부개정¹⁾하려는 것임.

<조례안의 제명 및 조문 배열>

|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| 제9조(협력체계 구축) |
| 제2조(정의) | 제10조(피해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) |
| 제3조(시장의 책무) | 제11조(사무의 위탁) |
| 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| 제12조(비밀 준수의 의무) |
| 제5조(사업) | 제13조(시행규칙) |
| 제6조(신고체계 구축) | 부 칙 |
| 제7조(예방교육 등) | |
| 제8조(지원시설의 설치 · 운영) | |

1) 법제처(2022)에서 발행한 『법령 입안·심사 기준』(pp. 734-735)에서는 일부 개정과 전부개정의 선택 기준을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분량, 중요도,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, 1)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, 2)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, 3)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는 등의 경우는 전부개정 요건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에 부합하고 있음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총칙 규정(안 제1조~제3조)

-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(안 제1조)과 용어정의(안 제2조),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,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,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2021년 4월 20일 「스토킹방지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「스토킹처벌법」)이 제정되면서 스토킹행위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었으나, 이 처벌법에는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 - 특히 스토킹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적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범죄 유형보다 절실한 바,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<표> 스토킹 112 신고 현황(2018~2021.7)

| 연도 | 2018.6~12 | 2019 | 2020 | 2021.1~7 |
|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건 | 2,772 | 5,466 | 4,513 | 4,432 |

| 스토킹처벌법 (2021. 4. 20., 제정) (시행 2021. 10. 21.) | 현행조례 (2022. 10. 17., 제정·시행) | 정의 대상 | 스托킹방지법 (2023. 1. 17., 제정) (시행 2023. 7. 18.) | 전부개정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(상대방 등에게)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|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게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| 스토킹행위 | | |
| | | 스토킹 | 스토킹행위 + 스토킹범죄 | 스토킹행위 + 스토킹범죄 |
| | | 스토킹행위자 | 스토킹을 한 사람 | 스토킹을 한 사람 |
| 지속적·반복적 스토킹행위 | 지속적·반복적 스토킹행위 | 스토킹범죄 | | |
| 스토킹범죄의 직접 피해자 | 스토킹범죄의 직접 피해자 | 피해자 | 스토킹의 직접 피해자 | 스토킹의 직접 피해자 |
| 피해자 + 스토킹행위 상대방 | 피해자 + 스토킹행위 상대방 | 피해자등 | 피해자 + 가족구성원 | 피해자 + 가족구성원 |

○ 조례안은 「스토킹방지법」에 따라 지속성과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는 ‘스토킹범죄’에서 ‘스토킹행위’까지 포괄하는 ‘스토킹’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는데, 이는 「스토킹처벌법」에서 스토킹범죄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도 사법 경찰관리가 응급조치, 긴급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²⁾에 따

- 2)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)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. 스토킹행위의 제지,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
 2.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
 3.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

른 것임.

□ 계획의 수립 (안 제4조)

-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 - 이는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여성폭력방지 정책과의 통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성 및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³⁾에 따라 수립되는 ‘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

-
- 4.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(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)

제4조(긴급응급조치)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1.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- 2.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
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(이하 “긴급응급조치”라 한다)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,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,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3) 「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되,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1. 여성폭력 예방·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
 - 2.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- 3.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 - 4.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·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보호·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'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□ 신고체계의 마련(안 제5조)

- 전부개정안은 시민들이 스토킹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.
 - 「스토킹방지법」제3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스토킹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해 조치해야 사항 중 제1호로 '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'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- 다만 스토킹(범죄)가 강력범죄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나,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개별 지자체에서 별도로 신고하던 것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신고·처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12로 일원화한 사례를 고려할 때 서울시만 단독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것의 실효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임.

□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및 예산지원(안 제6조~제7조)

-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각 호로 개별 사업 (안 제6조)들을 규정하고,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을 통해 예산을 지원(안 제7조)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사업내용은 정책 결정과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(제1호)과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(제2호),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(제3~4호),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(제5호)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- 다만 안 제6조가 복수의 항으로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제1항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□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·홍보(안 제8조~제9조)

- 본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, 서울시경찰청 및 교육청, 타 지방자치단체, 관련 법인·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,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□ 위탁(안 제10조)

- 조례안은 안 제6조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 - 이는 스토킹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는 바, 향후 사업추진 시 위탁체 선정 및 관리에 있어 전문성과 성과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.
- 다만 사업의 내용은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중 “제7조의제1항”을 “제6조”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□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피해자 의사 존중 의무(안 제11조~안 12조)

- 조례안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나 개인의 사생활 등을 다루게 되는 만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3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「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- 다만 용어의 뜻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와 개정안의 지원대상이 상이한 바, 집행기관은 조례 시행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윤영희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103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년월일: 2023년 08월 14일
발의자: 윤영희 의원(1명)
찬성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경훈,
김규남, 김영옥, 김영철,
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
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
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
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
윤종복, 이민석, 이상욱,
이종환, 최민규, 최진혁,
허훈, 홍국표, 황유정,
황철규 의원(34명)

1. 제안이유

-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. 2023년 제정된 상위법인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과 일치하도록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법적 정합성과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함.
- 나. 스토킹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(안 제2조).
- 다. 주요사업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(안 제5조 제6호 및 제9호, 제10호).

라. 피해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마. 그 외 각 조항에 ‘스토킹범죄’를 ‘스토킹’으로 변경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토킹”이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.
2. “스토킹행위자”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.
3. “피해자”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4. “피해자등”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스토킹을 예방하

고 피해자등을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·지원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스토킹 예방·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
2. 피해자등의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시책
3.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「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·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)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2. 스토킹 예방을 위한 조사, 연구,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
3.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

4.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

5.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지원사업

6. 피해자등의 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사업

7.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사업

8.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·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

9.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·지원 체계 구축사업

10. 피해자등의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

11.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신고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시민이 스토킹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구축·운영하는 경우에 스토킹 피해자등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7조(예방교육 등)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,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·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교육기관, 민간단체,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·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·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③ 시장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, 서울특별시경찰청, 서울특별시교육청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·협력 등의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10조(피해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, 공무직, 직접 고용된 지원 인력 등이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인 경우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

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과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
 2.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 제한,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
 3. 전보, 전근,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
 4.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
 5.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, 예산 또는 인력 등 이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,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,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
 6.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,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
 7.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
 8.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
- ② 시장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,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1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·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

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